

의안번호	2218494
의 퇴 인	염태영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D229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도록 함	재량규정
2	안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되고, 현행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시정명령 등으로 대체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움
 - 현행법 시행령²⁾은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으로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

1) **현행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현행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현행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료 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 또한 현재의 시행령과 유사하게 규정될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신규 보조사업의 내용과 규모 또한 반영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향후 추진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12조에 대하여도 향후 개정안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가 시정명령 등으로 변경되는 대상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